

## 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(요약)

구 분	당 초	개 선
① “ <b>종중소유 산지</b> ”의 <b>적법한 권원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중소유 산지에서 종중 대표가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<u>공증된 종중회의록 의무 제출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</u>에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인정</li> </ul>
② “ <b>주업으로 하는 자</b> ”의 <b>연간 판매금액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임산물생산업·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임산물·목재 판매금액을 <u>연간 판매금액으로 증명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임산물·목재 판매금액</u>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</li> </ul>
③ “ <b>주업으로 하는 자</b> ”의 <b>연간 경영투입비용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임산물생산업·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경영투입비용을 <u>연간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</u></li> <li>○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농자재 및 종자·육묘 등 구입비, 인건비로 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</u>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분만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○ <u>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「산지관리법」 시행령 별표3의3에 의한 다음의 시설·행위까지 확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산림경영관리사,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, 간이 임업용 시설, 임산물 간이처리시설, 임도, 작업로, 임산물 운반로</li> </ul> </li> </ul>
④ “ <b>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</b> ”의 <b>육림 실적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림업의 실적은 <u>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조림, 숲가꾸기 등의 실적을 인정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 보조사업 실적과 더불어 <u>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한 산주 직접 실행실적도 인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은 신고수리증, 사진첩 등으로 증명</li> <li>※ 조림,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 가꾸기, 가지치기는 사진첩, 계약서, 영림일지 등으로 증명</li> </ul> </li> </ul>

※ 상세내용은 붙임1~4 참조

# 1

## “중중소유 산지”의 적법한 권원 기준

- ❖ 「임업직불제법」 제8조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) 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의 경우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필요

### □ 관련법률 <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5호>

- (제8조)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
  - (제3항)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
    - \* (제5호)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

### □ 「2022년도 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」

- 종중원이나 타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종중(종중 대표)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통해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.
- 다만, **종중 대표**의 경우에는 대표가 임의로 종중의 재산을 사용·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.

### □ 개선사항

- 공증 절차의 번거로움, 추가 비용 발생 등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에게도 종중회의록 공증과 관계없이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

## 2

## “주업으로 하는 자”의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기준

- ❖ 시행령 제5조(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) 제1호나목, 제2호나목
  -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(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)
- ❖ 시행령 제18조(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) 제1호나목
  - 목재 판매액이 연간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

### □ 적용 사유

- 임산물·목재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어 매년 판매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간 평균 판매금액으로 적용하며, ‘주업으로 하는 자’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있는 임업을 하는 자이므로 기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여 판정

### □ 판정 기준

-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(임업직불 시행지침 22페이지 사례1 참조)

### <참고: “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”의 연간 판매금액>

- ❖ 시행규칙 제4조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) 제1항제3호 “임산물생산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각 목의 금액 이상인 자”
  - 가. 임업인인 경우: 120만원
  - 나. 농업법인인 경우: 4천500만원

- “연간 판매금액”으로 규정되어 있고, 임산물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어(2년 이상) 매년 판매 증빙이 어려운 품목이 있음
- (판정기준\_기 반영)
  -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('22년 한시적 유예\_공문 시달 완료)

- ❖ 시행령 제5조(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) 제1호다목, 제2호다목
  - 임산물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·육묘 등 구입비,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,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
- ❖ 시행령 제18조(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) 제1호나목
  - 농자재 및 종자·육묘 등 구입비, 인건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

## □ 적용 사유

- ① 생산주기(경영기간)가 길고 조방적인 임업의 특성으로 매년 반복적인 경영투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여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판정
- ② 현장의 다양한 경영투입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인정 범위 확대

## □ 판정 기준

- ①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 10년 이내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(임업직불 시행지침 22페이지 사례1 참조)
- ② (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)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경영 투입된 다음과 같은 용도의 비용
  - 농자재, 종자·육묘 등 구입비, 인건비 등
  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(산림경영관리사), 다목(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. 단 주거목적 제외), 라목(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)의 설치·유지 비용
  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(임도), 나목(작업로, 임산물 운반로)의 설치·유지 비용과 제6호(임산물 재배)에 투입된 비용
  - \*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 분만 인정함
  - \*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·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·판매·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

- ❖ 시행규칙 제10조(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) 제1항
  - “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”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,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를 의미한다.

## □ 적용 사유

- 실적인정 사업 범위와 산주 직접 실행에 대한 판정 기준 마련 필요

## □ 판정 기준

- ❶ (대상사업) 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”에 의한 아래의 사업
  - 조림(식재조림, 파종조림, 용기묘조림), 천연림갱신(천연하종갱신, 움싹갱신),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가지치기, 숲아베기, 천연림보육, 천연림개량, 움싹갱신 보육
- ❷ (판정 기준) 「산림자원법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(법 제13조제1항)로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하여야 함(시행령 제22조제2호)
  - i) 보조사업과 산주 직접 실행 모두 인정. 단, 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\*만 인정
    - \* 「산림자원법」 13조제5항(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(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) 준수
  - ii) (산주 직접) 실행신고를 해야 하는 “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\*은 지자체장이 수리한 실적만 인정(신고수리증, 전·중·후 사진첩 제출)
    - \* 대상사업: 숲아베기, 천연림보육, 천연림개량
  - iii) (산주 직접) 실행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조림,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가지치기는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·중·후 사진첩(필수), 영림일지(사진 필수),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, 설계도·서,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제출
  - iv) (보조사업)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실적인정